

#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## (조승래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904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6. 10. 25.

발의자 : 조승래 · 강창일 · 김민기  
김병욱 · 김영춘 · 노웅래  
도종환 · 신창현 · 안민석  
오영훈 · 윤관석 · 전재수  
전해철 · 전혜숙 · 황주홍  
의원(15인)

### 제안이유

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2년마다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관한 시책 및 그 시행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해당 연도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며,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음.

그러나 현재 공공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는 언어는 올바른 국어사용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, 어려운 단어와 외래어 표기들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어 국민들이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.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어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어 순화와 전문용어의 표준화·체계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국어책임관 지정을 의무화하는

한편,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관한 시책 및 그 시행결과에 관한 국회 보고를 매년 하도록 함으로써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.

## 주요내용

- 가. 국어 발전 기본계획에 국어 순화와 전문용어의 표준화·체계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(안 제6조제3항제1호 신설).
- 나. 정부는 매년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관한 시책 및 그 시행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정기회가 열리기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(안 제8조).
- 다.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어책임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도록 의무화함(안 제10조제1항).
- 라. 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에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두도록 함(안 제17조제2항 신설).

##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어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3항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제11호 및 제12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### 10. 국어 순화와 전문용어의 표준화·체계화에 관한 사항

제8조 중 “2년마다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관한 시책 및 그 시행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해당 연도 정기국회가”를 “매년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관한 시책과 그 시행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정기회가”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지정할 수 있다”를 “지정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제14조제1항 본문 중 “공공기관등의 공문서는”을 “공공기관등은 공문서를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,”로 한다.

제1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에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둔다.

③ 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 절차,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) ① · ② (생 략)        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/p> <p>1. ~ 9. (생 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<u>10. · 11. (생 략)</u></p>	<p>제6조(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         ③ -----          -----.</p> <p>1. ~ 9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10. 국어 순화와 전문용어의 표준화·체계화에 관한 사항</u></p> <p><u>11. · 12. (현행 제10호 및 제11호와 같음)</u></p>
<p>제8조(보고) 정부는 <u>2년마다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관한 시책 및 그 시행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해당 연도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</u></p>	<p>제8조(보고) -----<u>매년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관한 시책과 그 시행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정기회가-----</u>          -----.</p>
<p>제10조(국어책임관의 지정)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<u>지정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(생 략)</p>	<p>제10조(국어책임관의 지정) ① -----          -----          -----          -----  <u>-----지정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4조(공문서의 작성) ① <u>공공기관등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</u></p>	<p>제14조(공문서의 작성) ① <u>공공기관등은 공문서를 일반 국민이</u></p>

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팔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.

② (생략)

제17조(전문용어의 표준화 등)  
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,  
-----  
-----.  
-----  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7조(전문용어의 표준화 등) ①  
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  
② 제1항에 따른 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에 전문용어 표준화 협의회를 둔다.

③ 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 절차, 전문용어 표준화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